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99호 2021. 8. 23.(월)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45호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훈령 1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18호 도로명주소 고시	13
남해군 고시 제2021-119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	16
남해군 고시 제2021-12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8
남해군 고시 제2021-1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097호 공시송달 공고	32
남해군 공고 제2021-112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34
남해군 공고 제2021-1146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6
남해군 공고 제2021-1154호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 주민 의견 청취	40
남해군 공고 제2021-1157호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41
남해군 공고 제2021-116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45
남해군 공고 제2021-1161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6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45호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훈령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1년 8월 1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남해군 소속 구성원(남해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남해군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관련 부서별로 분장하여 책임있게 추진한다.

1. 성희롱·성폭력 업무부서장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설치·운영, 연간 기본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 라 한다) 설치·운영
2. 감사업무부서장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결정된 사안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
3. 인사업무부서장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가해자 징계조치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 라 한다)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담당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 조치
-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업무 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군수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성희롱·성폭력 업무부서장, 감사업무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 중 3명은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회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등 결과통지) 군수는 당사자에게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징계)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 2차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 청 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 리 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 위 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조사 신청 취지	<p>※ 6차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자세하게 기록</p>				
요구사항	<p>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 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 타 ()</p>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건 당사자 통보용)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남 해 군 수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11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9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32-10 외 5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5)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8.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업무구분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86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213번길 40-45	20210730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27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승로 432-10	20210730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송정리(소나무 숲 위쪽에 있는 마을에 정착이 있었던 곳)로 연결되는 도로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화계리 613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남서대로 208-51	20210729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4-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921번길 22	20210729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45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66번길 12	20210729	창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179-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고실로295번길 13	20210728	고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자산리 20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6번길 110-19	20210728	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난음리 211-1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난음로 251-9	20210728	행정구역명을 이용, 난음 뒷산이 난초꽃처럼 생겨 난화산이라 하였는데 산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게 되자 난음이라 불렀다고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115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733	20210728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489-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350-12	20210728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578-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305번길 80	202107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30-3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131-1	20210726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98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148번길 10	20210723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85-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1505번길 65-177	20210723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49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74번길 41	20210722	상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4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30번길 24-7	20210721	동부대로1030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자산리 264-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76번길 24	20210721	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355-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길 20	20210721	화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신구리 105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229번길 6	20210720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668-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737-41	20210719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984번길 68-54	20210719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67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177번길 23-21	20210719	남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6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42	20210719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19-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59번길 37	20210714	화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36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절개로 98-14	20210712	도산의 순우리말로 절그릇을 만들었던 곳을 의미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287-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46	20210712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19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44-8	20210712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용소리 1288-31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남서대로 396	20210712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78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42번길 77-2	20210712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다정리 1112-1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남해대로2431번길 61	20210712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486-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고실로229번길 23-87	20210712	고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145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62-21	20210712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신천리 1006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남해대로1567번길 48	20210702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79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984번길 18	20210702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율리 654-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2040-30	20210702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산39-7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652-52	20210702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6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3	20210702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118번길 45	2021070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 지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26	20210730	철거로 인한폐지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8-39	20210730	철거로 인한폐지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8-73	20210730	철거로 인한폐지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8-77	20210730	철거로 인한폐지	망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나길 13-19	20210730	철거로 인한 폐지	화전로96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고실로229번길 23-53	20210712	기초변칙 착오	고실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67	20210705	폐쇄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63-2	20210705	폐쇄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55-4	20210705	폐쇄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55-3	20210705	폐쇄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55-1	20210705	폐쇄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63-3	20210705	폐쇄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55-2	20210705	폐쇄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길 53	20210701	건축물 폐지에 의한 폐지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21 - 119호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남 해 군 수

1. 적용 범위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낙시어선업자 (이하 “낙시어선업자”라 한다)와 선원(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 안전요원” 포함) 및 그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영업시간의 제한

낙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 미설치 낙시어선

-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으로 한다.(기상청 발표기준)

나.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가 설치된 낙시어선 중 어선검사증서 상 항해 가능 시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 03: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3. 영업구역 제한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법 제27조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낙시어선업 영업을 금지한다.

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 나. 야간 어로 및 항해제한·금지수역
- 다. 다른 법령(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
- 라. 간출암
- 마. 남해군의 육지부(유인도서 포함)를 기점으로 3해리 밖의 수역(선외기 설치어선 중 3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한한다)
- 바. 낚시어선업자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상 잡종선(목재류, 합성수지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

4.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사항

- 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7조 제1항을 포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은 무인도, 갯바위 등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 라. 낚시어선업자등은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 마. 낚시어선업자등은 「어선법」 제5조의2 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 바.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 갯바위 낚시 승객 등)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갯바위 등 모든 낚시장소에서 구명조끼 착용하여야 한다.)
- 아. 낚시어선업자등은 출항 전에 낚시어선의 안전 점검, 기상상태 확인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 자. 낚시어선업자등은 법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낚시어선업자등은 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하는 운항 규칙을 준수하여 낚시어선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5. 속력제한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가. 남해군 지족해협 내에서 운항할 때

나.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운항할 때

다. 양식장, 정치망어장, 조업 중인 어선의 주변을 운항할 때

6. 낚시어선업자등의 준수사항

가. 낚시어선업자등은 [별표 1]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낚시어선 신고 확인증」과 [별표 2]의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및 [별표 3]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문」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업자등은 출항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내용을 해양수산부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2항의 승선자 명부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라.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마. 낚시어선업자등은 승객을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그 관할 시장·군수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고시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출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상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위 (2)목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1 제1호 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군수가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어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 낚시어선업자등은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아. 낚시어선업자등은 영업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자.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장소(갯바위 등)에 하선하는 때에는 출항시 또는 승객 하선 후에 승객별 하선지점을 출입항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승객을 안내 이후 승객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단, 하선지점은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도서명, 연안지명 등으로 한다.)
- 차. 낚시어선업자등은 갯바위 하선승객을 철수시킬 때에는 일일 2회 철수승객 명단을 출입항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통보시기는 13:00, 22:00)로 하며 입항기준 각 통보시기를 넘지 않아야 한다.)

7.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 가.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선상을 포함한 모든 낚시장소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등이 승선자명부 작성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의 내용을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다.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어선업자등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에 대한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 라. 낚시어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마.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2) 구명조끼 착용 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4)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5)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저해하는 행위
 - (6)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사. 낚시어선 승객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아. 낚시어선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준수하고 체장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2020. 9. 25.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시행)
- 자.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 가. 미FDA에서 실시하는 지정해역 점검기간에는 지정해역 내에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 나.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남해군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등 낚시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고시 제2021-19호는 폐지한다.

[별표 1]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구 분	설 비
1. 안전·구명 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거즈,소독약,해열제,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비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안전·구명설비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개별 방침에 따른다.

[별표 2]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 1.
- 2.
- .
- .

승선정원 ()명

승객 준수사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을 게시하오니 낙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낙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낙시어선 승객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낙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이 승선자 명부 작성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의 내용을 거짓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3. 낙시어선 승객은 낙시어선업자등으로 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등에 대한 승객의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
4. 낙시어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낙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어선일 경우에는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낙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구명조끼 착용 지시 및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낙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저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7. 낙시어선 승객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낙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낙시어선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준수하고 체장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9. 낙시어선 승객은 낙시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3]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게시용) <예시>

1. 안전사고 예방

□ 안전한 승하선 방법

-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사용

장비명	보관장소	사 용 법
구명조끼	보관장소를 기재	① 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 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 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호각을 불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구명뗏목	보관장소를 기재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
구명부환	보관장소를 기재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 있도록 하여 사용
구명줄	보관장소를 기재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
소화기	보관장소를 기재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 쪽을 향하여 분사

□ 비상신호

- 장음 3회(호각), 음성방송, 구두로 비상 상황 전파

□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 집합장소 : 갑판
- 피난요령 :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

□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 통영해양경찰서 : 상황실 055-647-2742(122접수)
-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구,어업정보통신국) : 055-833-6413
- 남해군청 : 당직실 055-860-3222

□ 유사시 대처요령

- 승 객 : 유사시 선장(선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림
- 선장(선원) :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

2. 주요 낚시어종의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

어 종	금지기간	금지체장·체중
주꾸미	5. 11 ~ 8. 31	-
갈 치	7. 1~7. 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제외)	18cm이하(항문장)
문치가자미	12. 1 ~ 익년 1. 31	20cm이하
넙 치	-	35cm이하
감성돔	5. 1 ~ 5. 31	25cm이하
들돔·참돔	-	24cm이하
농 어	-	30cm이하
불 락	-	15cm이하
붕장어	-	35cm이하
참문어	5. 24 ~ 7. 8	

※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위반시 :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바람

4. 기타 사항

* 선박내 음주금지 등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방송용) <예시>

안녕하십니까? ○○호 선장(선원) ○○○입니다.
저희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하시기 바랍니다

2.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 낙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선내에서 음주는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명조끼는 선실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①몸에 걸친 다음 목 끈을 맨다 ②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필요한 경우 호각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구명뗏목은 선미우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사고시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하면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하여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 구명부환은 선미 좌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 구명줄은 조타실 외측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 소화기는 선미 및 선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 쪽을 향하여 분사하면 됩니다.

3. 비상신호

- 호각의 경우에는 장음 3회이며, 음성방송 또는 구두로 비상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4.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 요령

- 비상시 집합장소는 갑판이며, 피난 요령은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 관련기관의 유선번호는 통영해양경찰서는 055-647-2742이며,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은 055-833-6413이고, 남해군청은 055-860-3222입니다.
- 유사시 상황을 선장(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시면, 선장(선원)은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포획금지 채장·채중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 낚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채장·채중 및 금어기는 어선에 게시된 어종별 금지기간 및 금지채장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어업인이 위반시는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절대로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 - 121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33,957,063	502,919,054	31,038,009	
일 반 회 계	469,242,237	429,138,708	40,103,529	
특 별 회 계	64,714,826	73,780,346	△9,065,520	
상수도특별회계	15,413,066	23,017,503	△7,604,437	
청사건립특별회계	13,355,100	6,478,100	6,877,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6,246	724,315	61,931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25,261	825,26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75,747	555,544	20,203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3,759,406	42,179,623	△8,420,217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69,242,237	429,138,708	40,103,529	
지 방 세 수 입	22,987,606	19,501,606	3,486,000	
지방세	22,987,606	19,501,606	3,486,000	
세 외 수 입	12,092,885	10,582,023	1,510,862	
경상적세외수입	5,147,435	5,098,401	49,034	
임시적세외수입	6,462,450	5,031,582	1,430,868	
지방행정체제·부과금	483,000	452,040	30,960	
지방교부세	193,678,000	169,160,000	24,518,000	
조정교부금등	23,203,598	18,716,371	4,487,227	
보조금	181,563,577	170,591,627	10,971,950	
국고보조금등	138,439,621	130,241,745	8,197,876	
도비보조금등	43,123,956	40,349,882	2,774,0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716,571	40,587,081	△4,870,510	
보전수입등	23,254,798	40,450,569	△17,195,771	
내부거래	12,461,773	136,512	12,325,26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64,714,826	73,780,346	△9,065,520	
지방세			-	
세외수입	4,462,929	4,456,308	6,621	
경상적세외수입	4,214,950	4,214,950	-	
임시적세외수입	88,979	82,358	6,621	
지방행정체제·부과금	159,000	159,000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250,000		250,000	
보조금	15,697,200	28,151,813	△12,454,613	
국고보조금등	11,937,932	20,436,702	△8,498,770	
도비보조금등	3,759,268	7,715,111	△3,955,84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304,697	41,172,225	3,132,472	
보전수입등	4,639,591	2,130,825	2,508,766	
내부거래	39,665,106	39,041,400	623,706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469,242,237	429,138,708	40,103,529	
인 건 비	62,022,963	60,782,255	1,240,708	
물 건 비	30,052,283	28,465,231	1,587,052	
경 상 이 전	167,876,687	161,130,822	6,745,865	
자 본 지 출	163,213,317	137,158,968	26,054,349	
용 자 및 출 자	23,000	23,000	-	
보 전 재 원			-	
내 부 거 래	31,269,463	35,006,300	△3,736,837	
예 비 비 및 기 타	14,784,524	6,572,132	8,212,392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64,714,826	73,780,346	△9,065,520	
인 건 비	2,754,181	2,778,560	△24,379	
물 건 비	6,356,859	5,620,495	736,364	
경 상 이 전	10,072,735	9,927,487	145,248	
자 본 지 출	42,675,088	53,662,185	△10,987,097	
용 자 및 출 자			-	
보 전 재 원			-	
내 부 거 래	2,625,261	1,625,261	1,000,000	
예 비 비 및 기 타	230,702	166,358	64,344	

남해군 고시 제2021-1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금양천(지방하천)
2. 성 명 : 이은0
3. 주 소 : 진주시 평거로 00
4. 점용목적 : 관로매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 2182-17번지(724인근)
6. 점용면적 : 23㎡
7. 점용기간 : 2021. 8. 19. ~ 2026. 8. 18.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1097호

공시송달 공고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 8. 1. ~ 2022. 1.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42번지 외 12필지	하천정비 L= 291.2m 교량설치 1개소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1. 8. 6.~2021. 8. 20.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8. 6.~2021. 8. 20.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유자		관계인		
					지적	주소	성명	주소	
1	삼동면 동천리	1071	답	156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김O주			
2	삼동면 동천리	1072	답	130	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최O배			
						김O을			
3	삼동면 동천리	1073	답	277	부산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이O택			
4	삼동면 동천리	1075-1	답	321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강O수			
5	삼동면 동천리	1074-2	답	179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강O수			
6	삼동면 동천리	1074-1	답	150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강O수			
7	삼동면 동천리	2042	구	591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박O미			
8	삼동면 동천리	1051	답	330	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최O민			
9	삼동면 동천리	1054	답	40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김O식, 최O임			
10	삼동면 동천리	1055	답	47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김O식, 최O임			
11	삼동면 동천리	1056	답	32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최O환			

남해군 공고 제2021 - 112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이 시행하는 남해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년 7월 27일 수용재결하고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남해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 3. 사업장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4번지 외 17필지
- 4. 사 업 내 용 : 13,952㎡(급경사지 정비 L=262.0m)
- 5. 공 고 기 간 : 2021. 8. 11 ~ 2021. 8. 25 까지
- 6. 수용재결기관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 8.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물 건

수용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남해읍 아산리	209-3, 209-8	다래나무(수목보조 시설철재포함)	53주	미상		박주*	경남 남해군 남해읍화전로 ***, ***동 ****호)	
	209-8	냉동창고	1식					
	210	다래나무(수목보조 시설철재포함)	12주			원부*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 * *호(대화동, 월드메르디앙 오피스텔)	

남해군 공고 제2021 - 1146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련조항 삭제 : 조례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9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1, 팩스 055-860-370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전화 055-860-3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참고인 진술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10조 <삭제></p>

남해군 공고 제2021 - 1154호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 주민 의견 청취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4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남해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1. 8. 23.

남 해 군 수

- 1. 공 고 명 :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 주민 의견 청취
- 2. 의견수렴 : 공고일로부터 7일간
- 3.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주요내용
 - 가. 목 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남해군 공공디자인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나. 계획의 범위 : 남해군 행정구역 전체
 - 다.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개발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발굴 - 공공디자인 주민참여 등
-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공건축추진단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추진단(☎ 055-860-3243, 공공건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불임의 의견서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신 후 2021. 8. 30.(월)까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FAX(055-860-3752), 이메일(lux0812@korea.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해군 공고 제2021 - 1157호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26.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량	기간	비고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상주면 양아리 792-7번지 일원	사면정비 L=1,274m A=7,921㎡	2021. 9.~ 2022. 12.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개별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792-7번지 외 31필지 24,563㎡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4.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1. 8. 26. ~ 2021. 9. 9.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보상담당으로 서면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1년 9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제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용 지 조 서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관 계 인		권리내용
						주 소	주 소		주 소	성 명	
1	상주면 양아리	792-7	전	934	934	부산시 남구 민락동 1600	김하오				
2	상주면 양아리	792-6	전	182	182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00	박동오				
3	상주면 양아리	792-3	도	258	258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400	김익오				
4	상주면 양아리	산292-4	임	95	95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00	박필오				
5	상주면 양아리	790-3	전	86	8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전수오				
6	상주면 양아리	산294-3	임	413	41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전만오				
7	상주면 양아리	786-9	전	246	2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00	전영오				
8	상주면 양아리	788	전	307	307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00	김정오				
9	상주면 양아리	788-1	전	671	67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00	정은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면리 240-6	남해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0	상주면 양아리	786-8	전	337	33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300	정국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82	동남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지상권	
11	상주면 양아리	산306-4	임	1,725	1,72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정국오				
12	상주면 양아리	산310-4	임	49	4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김익오				
13	상주면 양아리	785-3	전	156	15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박준오				
14	상주면 양아리	산305-7	임	1,216	1,216	경기도 수원시 관산구 세류동 417-00	김정오				
15	상주면 양아리	산312-1	임	2,477	2,47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00	하혜오				
16	상주면 양아리	산305-9	임	484	484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00	박진오				
16-1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00	박순오				
16-2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0	박석오				
16-3	"	"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00	박선오				
17	상주면 양아리	산314-1	임	3,439	3,43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00	박영오				
18	상주면 양아리	산315-1	임	377	377	김해시 봉황동 455-2 광남 백조아파트 1동 00	박경오				
19	상주면 양아리	산317-12	임	238	238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00	하창오				
20	상주면 양아리	산317-10	임	470	47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하정오				
21	상주면 양아리	산317-8	임	2,402	2,40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하정오				
22	상주면 양아리	산316-1	임	179	17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00	박태오				
23	상주면 양아리	산317-11	임	495	49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하정오				
24	상주면 양아리	산315-2	임	294	294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00	박경오				
25	상주면 양아리	산316-2	임	1,873	1,87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00	박태오				
26	상주면 양아리	산334-5	임	4,237	4,23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학교법인오				
27	상주면 양아리	산334-3	도	624	335	00	남해군				
28	상주면 양아리	산334-1	도	2,086	51	00	남해군				
29	상주면 양아리	산318-7	도	1,955	44	00	국토교통부				
30	상주면 상주리	산341-1	임	235	2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0	조성오				
31	상주면 상주리	산234-3	도	2,118	103	00	국토교통부				
32	상주면 상주리	산338-14	도	155	15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00	박주오				

남해군 공고 제2021-116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정*	주소	김해시 가락로 ***
소하천명		남양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1643번지 일원(남양리 180-1번지 인근)		
	면적	1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1. 8. 19. ~ 2026. 8. 18.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1-1161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민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민대상 조례」

2. 개정이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군민대상 수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조문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군민대상 시상범위 확대 및 명확화(제3조)

기존 모호한 기준의 부문을 5개 분야(봉사, 산업, 체육, 교육·문화, 효행)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

나. 기존 조문 개선 보완

1) 용어 정비 : 제1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용어의 정비

2)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 보완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9월 8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5,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한 공로한” 을 “공헌한” 으로, “시상하는 남해군민 대상 수상에 관한” 을 “남해군민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봉사부문 : 사회윤리의 실천과 선양에 공헌하였거나 사회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 2. 산업경제부문 :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면서 소득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공헌한 사람 또는 제조업 등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 3.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국내·외 경기 활동 등을 통하여 우수한 업적으로 남해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 4. 교육·문화예술부문 : 교육 및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거나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보전·전승, 창작활동을 통한 우수작품 발표 등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사람
- 5. 경로효친부문 :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람

② 군민대상은 부문별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중 “수상대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를 “수상자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를 “(군민대상심사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선정” 을 “선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출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본 위원회는” 을 “위원회의 위원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리 수상)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u>남해군민 대상 수상에 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시상대상자) ① 군민대상은 군민의 공지를 더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상한다.</p> <p>1. <u>주민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노력하거나 효행·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u></p> <p>2. <u>농업·임업·수산업·유통업 및 미래 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u></p> <p>3. <u>문화·체육·관광·환경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u></p> <p><신 설></p> <p><신 설></p>	<p>제1조(목적) ----- ----- 공헌한 ----- ----- 남해군민 대상을 시상 하는데 필요한 -----.</p> <p>제3조(시상대상자) ① ----- ----- -----.</p> <p>1. 봉사부문 : <u>사회윤리의 실천과 선양에 공헌하였거나 사회복지 증진 및 봉사 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u></p> <p>2. 산업경제부문 : <u>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면서 소득작목 개발 및 단위 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공헌한 사람 또는 제조업 등에 종사하면서 기술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u></p> <p>3. 체육부문 : <u>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국내·외 경기활동 등을 통하여 우수한 업적으로 남해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u></p> <p>4. 교육·문화예술부문 : <u>교육 및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거나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보전·전승, 창작활동을 통한 우수작품 발표 등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사람</u></p> <p>5. 경로효친부문 : <u>부모와 웃어른을 공경</u></p>

② 군민대상은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2명을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①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군내 기관단체장,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본 위원회는 해당연도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람

② 군민대상은 부문별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
-----.

제5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① -----
----- 선정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호선한다.

④ -----
----- 위촉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일비와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추서)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으로 추서 교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대리 수상)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